

제 15기 정기주주총회 안내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 조에 의거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03월 31일(월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55
(주)진코스텍 안산공장, 1층 세미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제 15기 (2024. 01. 01 ~ 2024.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임준 선임의 건

제 2-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영훈 선임의 건

제 2-3호 의안 : 사내이사 황길수 선임의 건

제 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명희 선임의 건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재선임)

제 3-1호 의안 : 감사 홍석준 선임의 건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15억원)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1억원)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 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나. 대리행사시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금번 정기주주총회에는 사은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첨부 : 부의안건 설명 요지

2025년 03월 14일

주식회사 진코스텍
대표이사 김임준(직인생략)

부의안건 설명 요지

제 1호 의안 : 제 15기(2024년 01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상법 제 449조에 근거하여 제 15기 재무제표를 승인 받고자 함.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 상법 제 382조 및 당사 정관 제 32조에 근거하여 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가.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등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임준	1967.02.10	사내이사	아니오	본인	이사회
김영훈	1973.08.13	사내이사	아니오	-	이사회
황길수	1971.04.11	사내이사	아니오	-	이사회
김명희	1966.02.26	사외이사	아니오	-	이사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임준	(주)진코스텍 대표이사	2010.06~현재 2007.10~2009.08 1999.03~2007.07	현) (주)진코스텍 대표이사 전) (주)제이티 이사 전) (주)오티케이 부장	-
김영훈	(주)진코스텍 부사장	2010.06~현재 2006.12~2010.05 2003.03~2006.06	현) (주)진코스텍 부사장 전) (주)제이티 생산부장 전) (주)제닉 생산관리팀장	-
황길수	(주)진코스텍 상무이사	2012.12~현재 2005.11~2012.09 2003.09~2005.10	현) (주)진코스텍 상무이사 전) 세무법인 아람 이사 전) 영일세무법인 이사	-
김명희	변호사	2016.06~현재 1995.02~2016.05	현) 법무법인 좋은사람들 대표변호사 전)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 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임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황길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명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사를 개선하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
-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주요 경영 사안을 결의.
- 제반 법령 및 회사의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윤리를 준수하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임준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다년간의 경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영훈 사내이사후보자]

후보자는 당사의 해당 사업 분야에 역량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및 기업성장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황길수 사내이사후보자]

후보자는 고도의 회계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및 인사, 총무 총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 및 기업성장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김명희 사외이사후보자]

후보자는 법률전문가로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재선임)

▣ 상법 제 409조 및 당사 정관 제 32조에 근거하여 감사를 선임하고자 함.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홍석준	1970.05.05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홍석준	공인회계사	2007.01 ~ 현재	현)공인회계사 홍석준 사무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홍석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세무의 탁월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15억원)

▣ 상법 제 388조 및 당사 정관 제 44조에 근거하여 제 16기(2025년도)의 이사보수 한도를 승인하고자 함.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1억원)

▣ 상법 제 388조 및 당사 정관 제 44조에 근거하여 제 16기(2025년도)의 감사보수 한도를 승인하고자 함.